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4가합53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0103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4가합53314 판결

전문

원고A(종중회1)

피고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 종결 2016. 11. 4.

판결 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들은 인천 서구 B 답 2,194㎡ 중 별지 제1목록 '대상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은 인천 서구 C 답 246㎡과 D답 12㎡ 중 별지 제2목록 '대상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은 인천 서구 E답 92㎡ 중 별지 제3목록 '대상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라. 별지 제4목록 기재 피고들은 인천 서구 I 답 183㎡ 중 별지 제4목록 '대상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마. 피고 J는 인천 서구 K 전 307㎡ 중 1/10지분에 관하여

각 2015. 4.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아래 <피고별 공탁금 표>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공탁금에 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L 7대 손인 'AM'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제1 내지 5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3. 14.경 원고로부터 명의수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거나, 그 상속인들이다.3)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E답 92㎡가 2010. 6.경, I 답 183㎡가 2013. 7.경 'AN 도로개설공사도로' 사업 지구내 부지로서 인천광역시에 수용되었다. 인천광역시는 2014. 11.경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J(각 1/11지분)에 대하여 별지 제6목록 제1공탁을, AO(각 1/11지분)의 상속인들(피고 L, P, Q, M, O, N)에 대하여 별지 제6목록 제2공탁을, AP(각 1/11지분)의 상속인들(피고 R, S, U, V, T, W)에 대하여 별지 제6목록 제3공탁을, AQ(I 답 183㎡의 1/11)의 상속인들(피고 X, Y, Z, AA, AB, AC)에 대하여 별지 제6목록 제4공탁을,

AR(I 답 183m²의 1/11)의 상속인들(피고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하여 별지 제6목록 제5공탁을 각각 하였다.

다. 한편, 피고 J, AS이 각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J의 사위인 AT과 공모하여 AT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원(피고 J), 4,500만 원(AS)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2012. 9.경 최종적으로 피고 J, AS은 각 벌금 200만 원, AT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2고단 8489, 인천지방법원 2012노2951, 대법원 2012도15698 횡령 사건)], 또한 최초 명의수탁자 중 AP, AO, AQ, AR의 각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명의수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원고와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7. 8. 임시종중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J와 AS4), AP, AO, AQ, AR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환수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J, Y, Z, AA, AB, A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AM'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면, 그 종원 범위에 포함되는 AU, AV, AW, AX, AY, AZ, BA, BB 등의 후손들에 대한 총회소집통지가 결여된 이상 종중의 총유물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위 피고들은 원고가 'AM'을 공동선조로 하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AM'의 후손 중 AU, BC(BD)의 후손으로 김포시 거주하는 일부 혈족들의 모임인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함에도 임의로 AM 종중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행판결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이는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가 종중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L 7대손인 AM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김포시에 모여 집거한 자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전부터 매년 시제를 지내고, 그 종중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등을 관리하여 온 사실, 1990년 이전까지는 회장인 BE 혼자 연락 가능한 10명 남짓한 종원들과 시제를 지내고 정기총회를 개최하다가, 1991. 10.경 이르러 위 BE이 대표자인 회장으로, 총 종원 40명으로 구성된 종원 명부를 작성하고, 1991. 11. 15. 규약을 제정하였으며(을 제6호증), 1995년경에 이르러 회장이 BF으로 바뀐 후 다른 종원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현재 종원수를 확보하고, 규약을 5차례 걸쳐 변경해 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 의해 관리되던 중 1981년경 각 AM 후손들 중 BD의 후손들인 명의수탁자들에게 이전등기되었고, 이들은 1995년경 원고에 의한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AL 7대손인 AM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원고로부터 명의수탁한 것임을 모두 자백한 사실(나아가 이 사건에서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피고들 또한 원고 종중이 본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애초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관계를 다투지는 아니한다), 현재 연락 가능한 종원들로 구성된 종원명부의 종원들이 주로 AM의 후손 중 BD의 후손이기는 하나 원고 규약 내용은 그 명칭을 A종중회, 종원 자격은

AM계파종친으로 만 20세 이상 남녀로 구성되는 내용으로 AM의 후손인 이외의 달리 지역이나 분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 종종 이외에 7대손 AM을 공동선조로 하는 다른 종종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L 7대손인 AM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김포시에 모여 집거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후대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종종이라 판단되는바, 이와 다른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종종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내용 등을 결의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기존에 연락가능하였던 종원들에게만 연락하여 총 71명이 참석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적법성 여부가 문제시되자, 이 사건 소 제기 등을 2016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종원 명부를 다시 확정하여 2016. 1. 17. 확인되는 총 240명 가량의 종원들에게 소집통지한 뒤 추인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종원들을 파악하고 통지하여 추인결의를 하였다 보이므로, 설령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임시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추인결의를 통하여 치유되었다 판단되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J, Y, Z, AA, AB,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 Y, Z, AA, AB, AC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내지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짜는 피고 AC에 대한 2015. 4. 16.인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무렵 명의신탁관계가 모두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5. 4. 16.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별지 1 내지 5 목록 해당 대상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별지 4, 5목록 해당 대상지분에 관하여는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각 해당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진

판사장원정

판사김달하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6. 4. 19. 원고 명칭을 종래 F 종회에서 규약에 정해진 A종중회로, 주소는 인천 서구 G에서 이전된 주소지인 인천 서구 H, 3동 3층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바, 아래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정정한다.

2) 원고는 소장에서 해지일자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에 기한 명의신탁 해지'라 특정한 뒤, 이후 2015.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터 해지일자를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송달일자인 2014. 5. 27.로 특정하였으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최종송달일자로 선택한다.

3) 아래 다투는 피고들(피고 J, Y, Z, AA, AB, AC)이 원고로부터 명의수탁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피고 J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인천지방법원 94가합1955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를 제기하여 1995. 2. 23. 피고 J 등 등기명의인들의 원고 주장에 대한 자백 또는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명의신탁관계의 정황이 되는 반면, 명의신탁관계를 다투는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종중으로서의 성격 내지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 내지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AS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 결과 2015. 9. 21.자 강제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